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27
----------	-----------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2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되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를 삭제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5조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기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각각 교육정책국장과 교육지원국장이 되며”를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외부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되고” 를 “위원장과” 로, “위원들이 선출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담당 부서의 장” 을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 를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 를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를 “위원장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담당 국장급” 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을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 의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